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탈법행위 유형 구체화 및 연동제 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71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탈법행위의 유형 구체화	2
2. 연동제 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6. 16.
3. 회 부 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Ⅲ. 검토의견

1. 탈법행위의 유형 구체화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려는 것임.¹⁾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④ (생략)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u>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u>동일한 내용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1)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7,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임.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⑥ ~ ⑫ (생략)	가. <u>각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u> 나. <u>각 하도급대금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u> 2. <u>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u> <u>를 요구·유도하는 행위</u> 3. <u>그 밖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u> ⑥ ~ ⑫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조제5항과 제30조의2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탈법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²⁾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2) 제30조의2(과태료)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이른바 ‘쪼개기 계약’),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등³⁾을 근절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음.

□ 위반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자세히 명시하는 것은 제재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에게 규범 준수 의지를 촉진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은 개정안 제3조제5항1호와 제2호에 명시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반행위의 양태를 법률 등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법정 제재수준도 비교적 높은 만큼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을 제시함.

3)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2.30.,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먼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확보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반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⁴⁾에서 규율이 가능하므로 법률로 정할 실익이 적고, 개정안 제3조 제5항제2호의 경우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합의 제안도 탈법행위에 포섭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요’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단순한 합의 제안도 탈법행위에 포섭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개정안이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봄.

4) 4.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의 금지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시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개시하겠다는 등 거래개시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다.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등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 마.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유지해왔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예상됨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바.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사.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2. 연동제 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⁵⁾

현행	개정안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 현행법 제19조6)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 5)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임.
- 6)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7)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 제35조8)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됨.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보복조치의 유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봄.

□ 다만, 현행법에서 보복행위의 대상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 자료제출인데 반해,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행위 유형은 다소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양태가 다양한데,

7)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아울러 하도급연동제가 시행된 지 2년에 불과(2023년 7월 시행)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제도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의 양태와 보복조치의 사례 등을 분석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조치의 구체적 양태는 일방적 거래단절⁹⁾이나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¹⁰⁾인데, 이들 행위는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

9)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10)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문 의 처
02)6788-5109